

구미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 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마련으로 시민 이해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 현행 : 「구미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」
- 개정 : 「구미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나.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(안 제4조)

-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: 2023년 12월 31일까지

다.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”를 “구미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“하천법’ ‘공유수면매립법””를 “「하천법」, 「소하천정비법」”으로 한다.

제4조를 제5조로 하고,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5조(중전의 제4조) 중 “조례 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조례의 시행에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중전의 「구미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중전의 「구미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구미시 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 영조례</u>	<u>구미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</u>
제2조(세입, 세출)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, 사용료(징수교부금포함), 부담금, 폐천부지 매각수입, 허가 수수료, 사업수입과 보조금, 기타 수입금(<u>‘하천법’ ‘공유수면매립법’</u> 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)을 세입으로 하고,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(하천공사 및 유지보수, 하천편입토지 보상, 하천조사설계용역, 기타 하천관리비용 등)를 세출로 한다.	제2조(세입, 세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하천법」, 「소하천정비법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.
<신 설>	제4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<u>제4조(시행규칙)</u> 이 <u>조례</u> <u>시행에</u> <u>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<u>제5조(시행규칙)</u> -- <u>조례의</u> <u>시행</u> <u>에</u> ----- -----.
---	---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소관 실·과		건 설 과
입 안 자	과 장	장 덕 수
	담 당	김 영 길
	담 당 자	조 우 찬 (480-5353)